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검정종별	면 제 대 상 자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4.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 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 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 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 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 결승 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 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 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 서 입선된 자	교육학 전공과목 실기고사 전 공 과 목·실 기고사 교 육 학·실 기 고사 전 공 과 목·실 기고사
특수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 육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교 육 학·실 기 고사
실기교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실기고사